

**한약관리 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문서번호 : 65613-1929

시행일자 : 1995. 07. 28 (5년)

수 신 : 한국생약협회장

제 목 :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

1. 농림수산부 원특 51266-395호('95.6.29) 및 한국생약협회 8-256호(95.6.22)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우리부고시 제 1995-17호, 95.3.25)』 부칙 제3조제1항 한약판매업자의 국산한약재 규격화 취급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농민 이외에 생산자 단체도 가공·포장한 한약재를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귀 부(협회)의 건의 등에 대한 우리부의 검토내용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필요시 여타 관련 단체(또는 회원)등에도 통보, 협조요청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의 차원에서 약사법령의 준수와 동 제도의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재품질및유통관리규정」 관련 유권해석 등

- 관련규정 :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우리부고시 제1995-17호, 95.3.25)』 부칙 제3조(한약판매업자의 국산한약재 규격화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 건의내용 : 동 규정상 생산자 단체가 규격품을 취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농가에서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가 가공·포장한 한약재를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의 시달 요망.
- 회신내용 : 동 건의사항은 규정의 개정이나 지침의 시달로 허용되는 사항이 아님.
 -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규격품」은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한약)을 판매할 수 있는 한약판매업자 외에는 이를 진열·판매할 수 없음.
 - 아울러, 상기 규정 부칙 제3조제1항 중 「농민」이라 함은 일반적인 한약생산자를 통칭하여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생적 농민단체 등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하여 농민이나 농민단체 등에게 의약품(규격품)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참고사항 : 상기 규정의 내용과 관계없이, 농민이 직접재배하거나 채취한 농산물 세척·건조 또는 단순가공·포장하는 행위 자체는 농산물 생산 과정의 일부이므로 약사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따라서 이와같이 생산된 농산물(의약품으로서의 효능·효과등을 표시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기재 등 불가)을 공판장이나 재래시장 등지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고 품질상태 등 조건이 맞는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한약판매업자나 의약품제조업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나,
 - 한약판매업허가(등록)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등이 표기된 규격품(의약품)』을 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낙술 연구관
(농진청 작물시험장)



일본 약용작물 재배현황

약용식물 재배기술 포럼에 다녀와서

**주요작물의 재배
면적 비교('93)**
(단위 : ha)

국별 작물	한국	일본
당귀	2,688	1,670
황기	1,608	126
천궁	579	1,640
시호	409	5,870
황련	-	6,035
재배 품목수	(50)	72

※ () 내는 추정치임

우리나라에서는 당귀, 황기, 천궁, 시호가 각각 1천6백ha로 집계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1천4백ha, 6백ha, 4백ha 순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당귀 1천3백ha, 황기 1천3백ha, 천궁 1천3백ha, 시호 1천3백ha 순으로 재배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재배면적은 약 0.3ha 배면적은 약 0.3ha

일본은 우리보다 농업에 있어서도 선진국이 다. 그러나 농업에서 도생약 생산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며 과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대시장으로 보고 지속적 수출, 나아가서는 수출확대를 시도해도 될 수 있을까?
최근 약용작물 재배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들 중 일부 품목은 수출이 유망한 품목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생약수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지난 7월12일 에 일본 쓰쿠바에서 개최된 『제5회 약용식물 재배기술 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가하는 기회에 거기서 일본을 수 있었. 일본 통계자료를 분석, 우리의 여건과 비교하면서 이 나라를 빌려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 소개되는 자료는 일본 특수 농산물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인용하였다.

**일본의 생약생산
현황('93)**

일본의 생약재배 규모는 1만6천ha가 2만9천9백ha를 재배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면적의 1.1% 정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70만ha의 재배면적 중 1만5천ha가 약초로 약2%에 해당되므로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 약초농사가 발달사상 비중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약재 배면적은 약 0.3ha

생약재배 여건 비교

국별	한국	일본
전체 발면적	70만 ha	280만 ha
약초재 배면적	15,000 ha	29,900 ha
호당 면적	0.3ha	1.8ha

**품목별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당귀, 황기, 천궁, 시호가 각각 1천6백ha로 집계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1천4백ha, 6백ha, 4백ha 순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당귀 1천3백ha, 황기 1천3백ha, 천궁 1천3백ha, 시호 1천3백ha 순으로 재배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재배면적은 약 0.3ha 배면적은 약 0.3ha

우리나라에서는 당귀, 황기, 천궁, 시호가 각각 1천6백ha로 집계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1천4백ha, 6백ha, 4백ha 순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당귀 1천3백ha, 황기 1천3백ha, 천궁 1천3백ha, 시호 1천3백ha 순으로 재배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재배면적은 약 0.3ha 배면적은 약 0.3ha

주요작물의 3백평당 조수의 비교(단위 : 천원)

국별	작물	당 귀	황 기	시 호	천 궁			
구분	kg당 가격	조수익	kg당 가격	조수익	kg당 가격	조수익		
한국	5.8	1,820	6.5	1,839	18	900	8.3	2,245
일본	9	1,710	66	5,850	35	1,520	6.7	2,070

※ 환율을 9:1로 환산

결 의 문

우리는 국내 유일한 생약생산자 단체의 일원으로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생약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농민 소득증대와 수출증대 또는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약생산농가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우리는 생산자 단체의 본분인 양질의 생약재배에 최선을 다하여 세계화시대에 적극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一, 우리는 경쟁력있는 품목의 선별 생산과 품질향상에 계속 정진하여 수출증대에 이바지 할 것을 결의한다.
 一, 우리는 새로운 품종개발과 과학영농의 실현으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결의한다.
 一, 우리는 우리가 생산한 생약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 모두 보호할 것을 결의한다.
 一, 우리는 국내 생산 가능한 약재의 무분별한 수입을 반대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一, 우리는 국민보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생약재를 살리기 위해 우리생약 살리기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一, 우리는 생산자 단체가 가공, 포장한 것도 규격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줄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회원일동